

# 변경보고서

## 1. 대상 펀드
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 등 9개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## 2. 주요 변경내용

- 모펀드(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) 자산운용제한 관련 법령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.나.(2)투자제한 <집합투자기구의 투자>	마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	마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<b>다만,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b>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## 3. 효력 발생일

: 2016년 8월 24일 (수).